가 (: )

## [시행 2020. 1. 1.] [대통령령 제30247호, 2019. 12. 17., 일부개정]

농림축산식품부 (축산경영과) 044-201-2346, 2347

- 1 ( ) 이 영은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2** ( )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조제2항 단서에서 "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1.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
- 2.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
- 2 2( 가 가 ) 법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천재지변이나 농 장식별번호 부여 대상이 아닌 소규모농가에 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1.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
- 2.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
- 3. 「축산법 시행령」 제14조의3제1호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닭 또는 오리 사육업인 경우
- 4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(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- 5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닭 또는 오리를 자가소비하기 위하여 양도 · 양수 또는 이동하는 경우
- 6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닭 또는 오리를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[본조신설 2019. 12. 17.]
- 2 **3(** ) 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종류의 영업"이란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」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(이하 "식용란수집판매업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[본조신설 2019, 12, 17,]
- **3** ( )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"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1.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수입된 경우
- 2. 「대외무역법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
- 3. 자사(自社)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된 경우. 다만, 포장육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된 경우는 제외한다.
- 4. 그 밖에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상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- **4** ( )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종류의 영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. 〈신설 2017. 6. 27., 2019. 12. 17. 〉
- 1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」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
- 2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, 제21조제7호나목에 따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
- 3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」제21조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
- 4. 식용란수집판매업
-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별표 1에 따른 신고 의무자를 말한다. <개정 2019. 12. 17. >
- **5** ( ) 법 제17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수입산이력축산물(부산물은 제외한다)을 취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제25조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영업장 면적이 700제곱미터 이상인 자
- 2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제25조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자
- 3. 「식품위생법」제88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의 신고를 한 자 중「학교급식법」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자
- 4.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
- **6** ( ) ①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 -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범위는 부산물을 제외한 이력관리대 상축산물로 한다. <개정 2019. 12. 17.>

[제목개정 2019. 12. 17.]

- 7 ( ) 법 제21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5년을 말한다.
- **8** ( **가** )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가축과 국내산이력 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7. 6. 27., 2019. 7. 2., 2019. 12. 17. >
- 1. 농장식별번호
- 2. 소 · 종돈의 개체식별번호
- 3. 이력번호
- 4. 소의 출생연월일 및 종돈의 등록연월일 또는 소 · 종돈의 수입연월일
- 5. 가축의 종류
- 6. 소·종돈의 암수 구분
- 7.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(이하 "가축사육시설"이라 한다)의 소재지
- 8.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(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, 이하 "농장경영자"라 한다)의 이름 또는 명칭
- 9. 도축장의 명칭 및 소재지
- 10. 도축연월일 및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도축 검사 결과

10의2. 계란의 산란일자

- 11. 「축산법」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(돼지고기는 개체별 및 등급별로, 닭고기, 오리고기, 계란은 등급별로 구분 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)
- 12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제22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(이하 "식육포장처리업자"라 한다)의 명칭 및 소재지
- 12의2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명칭 및 소재지
- 12의3. 법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칭 및 소재지
- 13. 소의 도체(屠體: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) 중량
- 14. 소·종돈의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
- 15. 소의 브루셀라병 · 결핵병 검사 결과
- 16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이력관리대상가축이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재된 날부터 도축·폐사 또는 수출된 후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- 9 ( )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〈개정 2017. 6. 27. 〉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이력번호
- 2. 선하증권번호(船荷證券番號)
- 3. 원산지(국가명)
- 4. 품명(부위명)
- 5. 수출업체명
- 6. 수입업체명 및 수입연월일
- 7. 수출국 도축장명(가공장명) 및 수출국에서의 도축연월일(가공연월일)
- 8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이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(이하 "수입유통식별대장"이라 한다)에 등재된 날부터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- 10 ( 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11 ( 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- 1. 협조가 필요한 사유
- 2. 협조 기간
- 3. 협조 사항
-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자, 법 제17조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및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 · 집단급식소운영자 · 통신판매업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(국내산이력축산물에 관한 경우만 해당한다)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. 〈개정 2017. 6. 27., 2019.

## 12. 17.>

- 1.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
- 2.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고, 출입·검사 및 수거. 다만, 제2항제10호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.
- 3. 법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· 징수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7. 6. 27., 2019. 12. 17.>
- 1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· 통보(수입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)
- 2.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 · 통보
- 3.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 · 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
- 4.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·포장처리·판매 신고의 접수
- 5.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(수입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)
- 6.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, 관리, 기록 수정 · 삭제 등의 조치, 보존 및 변경신고의 접수
- 7. 법 제22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에 관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수입유통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, 현장확인 등을 통한 수정
- 8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
  - 가. 소 수입자 · 수출자
  - 나.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 "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자"라 한다)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다. 식육포장처리업자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 ·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·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(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라.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 ·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(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9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. 출입ㆍ검사 및 수거
  - 가. 소 수입자 · 수출자
  - 나. 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자
  - 다. 식육포장처리업자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·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·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(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 - 라.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 ·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(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하다)
- 10. 질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치 등을 위한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· 검사
- 11.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· 보급(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)
- 12. 삭제<2017. 6. 27.>
- 13. 법 제3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· 징수
- 1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 수
  - 가. 소 수입자 · 수출자
  - 나. 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자
  - 다. 식육포장처리업자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·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·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(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 - 라.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 ·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(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15. 제10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 보급 대상자(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)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
- 16. 별표 1 제2호가목2), 같은 호 나목4) 및 같은 호 다목2)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신청의 접수
- ③ 삭제<2019. 12. 17.>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축산법」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. <개정 2017. 6. 27., 2019. 12. 17.>
- 1. 법 제4조에 따른 농장경영자의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, 농장식별번호의 부여·통보 및 변경신고의 접수. 다만, 제 5항제1호에 따라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.
- 2.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(종돈은 제외한다), 닭, 오리, 씨알의 양도·양수·이동의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접수
- 3.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
- 4.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돼지(종돈은 제외한다)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
- 4의2.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닭, 오리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
- 5.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, 닭, 오리 도축 전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이력번호의 부여· 통보
- 5의2. 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란 이력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이력번호의 부여·통보
- 6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중 국내산이력축산물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의 접수
- 7. 법 제19조에 따른 돼지(종돈은 제외한다), 닭, 오리에 대한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
- 8. 법 제21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 · 관리, 기록 수정 · 삭제 등의 조치 및 보존
- 9. 법 제22조제3항·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. 다만, 제6항제5호에 따라 축산 관련 법인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0.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, 출입 · 검사 및 수거(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)
- 11.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(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)
- 12. 삭제<2017. 6. 27.>
- 13. 별표 1 제1호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신청의 접수
- 14. 제10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한 교육(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)
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」제 4조제1호, 제5호 또는 「축산법 시행령」제26조제1항에 따른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〈개정 2019. 12. 17. 〉
- 1.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
- 2.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
- 3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· 통보(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)
- 4.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(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)
- 5. 법 제22조제3항·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
-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종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중 「축산법」제6조에 따라 종돈의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〈개정 2019. 12. 17.〉
- 1. 법 제5조제1항 · 제2항에 따른 등록 · 폐사 · 양도 · 양수 · 이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
- 2. 법 제6조제1항에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· 통보
- 3.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
- 4.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
- 5. 법 제22조제3항·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수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
- 6.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· 보급
-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종계,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를 「축산법 시행령」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〈개정 2019, 12, 17,〉
-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 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.
-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9. 12. 17. 〉

[제목개정 2019. 12. 17.]

- **13** ( 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1조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19. 12. 17. >
- 1. 법 제7조에 따른 귀표등의 부착에 드는 비용
- 2. 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· 관리에 드는 비용
- 3. 법 제11조 · 제11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이력번호의 표시 · 관리에 드는 비용
- 4. 법 제13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표의 부착에 드는 비용
- 5. 법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시스템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축 및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
- 6.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·관리 등에 드는 비용
- 7. 법 제26조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 · 보관 등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에 드는 비용
- 8. 법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드는 비용
- 14 ( ) 농림축산식품부장관(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시·도지사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19조제1호에 따른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〈개정 2017. 6. 27., 2019. 12. 17.〉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법 제4조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, 부여 · 통보, 변경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
- 2. 법 제5조에 따른 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ㆍ거래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에 관한 사무
- 3. 법 제6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에 관한 사무
- 4. 법 제11조에 따른 돼지, 닭, 오리 및 법 제11조의2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무
- 5.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 및 통보에 관한 사무
- 6.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 · 관리 및 변경신고 접수 등에 관한 사무
- 7. 법 제22조에 따른 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 및 오류 수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
- 8. 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정보 조사를 위한 보고 및 출입 · 검사 등에 관한 사무
- 9. 법 제25조에 따른 이력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
- 10. 법 제27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무
- 11. 삭제<2017. 6. 27.>
- 12. 법 제31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
- 13. 법 제35조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무
- **15** 삭제 <2016, 12, 30.>
- **16** ( )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〈개정 2019. 12. 17. 〉
- **17 (** )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"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.
-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"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포털서비스(다른 인터넷주소·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·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)제공사업자를 말한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법제35조제1항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합하여 연 2회 이상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농림축산식품부, 시·도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, 한국소비자원, 제1항에 따른 기관의 홈페이지와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.
- 1. "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위반사실의 공표"라는 내용의 표제
- 2. 영업의 종류
- 3.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
- 4. 위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등의 명칭
- 5. 위반 내용
- 6. 처분권자, 처분일 및 처분 내용
- 7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<제30247호, 2019. 12. 17.>

- **1** 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2 제2호어목부터 처목까지 및 퍼목의 개정규정 중 닭, 오리, 계란에 관한 사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 (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.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